

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8일
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

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(단위 : 명)

시험방법	선발예정			시 험 과 목
	구 분	계 급	인 원	
공개경쟁 임용시험	교육행정	9급	120	1차 : 국어, 영어, 한국사 2차 :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
	교육행정 (장애인)	9급	5	
	교육행정 (저소득층)	9급	3	
	사 서	9급	3	
	시 설 (일반토목)	9급	1	
경력경쟁 임용시험	시 설 (건 축)	9급	1	1차 : 물리 2차 : 건축계획, 건축구조
합 계			133	

※ 선택과목은 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.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2)

2 시험 방법

가.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객관식 4지 택 1형, 과목별 20문항)

구 분	공개경쟁임용시험(5과목)	경력경쟁임용시험(3과목)
시험시간	100분(10:00 ~ 11:40)	60분(10:00 ~ 11:00)

나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(제1·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)

※ 최종(면접)시험 합격자는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

3 응시 자격

가. 응시 결격사유

- 최종(면접)시험일을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거나, 같은 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사람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- *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*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*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*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*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*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*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*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[~2019.4.16.까지 적용]
- *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[2019.4.17. 시행]
- * 미성년자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[2019.4.17. 시행]
- *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*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▶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 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2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- 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-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,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- 1. 공공기관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

나. 응시 연령

시험 구분	응시 연령	해당 생년월일
공개·경력경쟁임용시험(9급)	18세 이상	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

※ 경력경쟁임용시험 【시설(건축) 9급】은 2019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(2002. 1월 ~ 2월 출생자) 해당자도 응시 가능

다. 학력·경력·성별

- 공개경쟁임용시험 : 제한 없음
- 경력경쟁임용시험 :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(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) 해당(관련)학과 졸업자(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로서, **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**이 있어야 합니다.

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 조건

- 아래 해당(관련)학과 졸업자(졸업예정자)
 - 건축(건축설비)
-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 한 자
 - 성적합산 : 졸업자는 고등학교 **전** 학년 성적,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~2학년 성적
 - 성취평가제 도입 학년
 -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, 보통교과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% 이내인 자
 - 성취평가제 미도입 학년
 - 학과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% 이내인 자
- 졸업자는 대학(4년제 대학, 전문대,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)에 재학·휴학·졸업의 학력이 없는 자
- 해당 고등학교의 해당(관련)학과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가능(2019. 1. 1. 현재)
 - ※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**【붙임1】 ‘2019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)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’**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,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 시교육청 총무과로 제출기간 내 접수 되어야 합니다.
 - ※ **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**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.



라. 거주지 제한 (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)

-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(면접)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(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 -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 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.
 -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 주민등록표” 를 기준으로 합니다.
 -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 - ※ 거주 기간 합산 요건(3년) 계산 방법은 「민법」 제160조제1항 역에 의한 계산에 따릅니다.
- ☞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: 경력경쟁임용시험 【시설(건축) 9급】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

마.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: 사서 직렬

○ 최종(면접)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.

직 렬	종목(응시에 필요한 자격증)	비 고
사 서	1·2급 정사서, 준사서	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

바. 장애인 구분 모집

- 응시자격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.
-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**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 불가)
-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**【붙임2】 ‘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’**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**장애인증명서 및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사. 저소득층 구분 모집

- 응시자격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**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**입니다.
- 응시자가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. [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.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]
 - 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지원대상자)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. [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]
 - ※ 단,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(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)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- 저소득층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. **(단, 중복접수 불가)**
-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※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 세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·군·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·한부모가족담당자(사회복지과 등)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4 문제 출제

가.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출제하며,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.

구분	출제기관	출제과목	공개여부	문제책 회수여부
위탁출제	인사혁신처	[공개경쟁 임용시험] 국어, 영어, 한국사,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,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응용역학개론, 토목설계	공개	미회수
공동출제	17개 시도교육청	[경력경쟁 임용시험] 물리, 건축계획, 건축구조	비공개	회수

※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고, 위탁출제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.

나. 사회는 법과 정치, 경제, 사회·문화, 과학은 물리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, 수학은 수학 I, 수학 II, 확률과 통계, 미적분 I에서 출제됩니다.

※ 2020년부터 사회, 과학,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.

다. 2020년도부터 ‘행정학개론’ 출제범위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, 2019년도에는 기존의 출제범위와 동일하게 지방행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
5 시험 일정

시험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필기시험	2019. 6. 3.(월)	2019. 6. 15.(토)	2019. 7. 12.(금)
면접시험	2019. 7. 12.(금)	2019. 7. 26.(금)	2019. 8. 1.(목)

※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en.go.kr>) “알림마당>시험공고”에 공고합니다.

※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,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homedu.gen.go.kr>)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.

6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기간 : 2019. 4. 15.(월) 09:00 ~ 2019. 4. 19.(금) 18:00까지

나. 취소기간 : 2019. 4. 15.(월) 09:00 ~ 2019. 4. 22.(월) 18:00까지

다. 접수방법

- 응시원서는 **나이스 대국민서비스(<http://homedu.gen.go.kr>)**에 접속하여 「**교직원 온라인 채용**」 → 「**지방공무원채용**」에서 접수합니다.
 - ※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 별로 안내합니다.
 - ※ 접수마감일 마감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,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수수료 : 5,000원

마. 납부방법 : 신용카드 결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

-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)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(단,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)

바.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

- 사진파일 : 3.5cm×4.5cm(파일 100Kb 이하), JPG형식, 해상도 100dpi, 컬러 증명사진
-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**3개월 이내**에 촬영한 것으로,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.
 - ※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(상반신)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,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

사. 응시표 출력 · 지참

- 응시표는 2019. 6. 3.(월) 10:00 ~ 2019. 6. 15.(토) 10: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, 시험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※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,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아. 유의사항

- 【수정, 취소】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, 취소는 2019. 4. 22.(월) 18:00까지 가능합니다.(단,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)



- **【수수료 환불】**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,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,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.
- **【중복접수 불가】**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,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**【접수 확인】**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을 하여야 하며, 또한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, 누락, 자격 미비자,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잘못하여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- **【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】**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서류제출을 통하여 확인합니다.
- **【학교장 추천】**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,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**【PC환경】** 운영체제 윈도우 7~10, 익스플로러 버전 7~11을 지원하고 있으나,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7 가산 특전

구 분		가 산 비 율	비 고
가. 취업지원대상자 (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)	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•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
나. 의사상자 등 대상자 (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)	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다. 자격증 소지자	1) 공통 적용 가산점	과목별 만점의 1% 또는 0.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• 가산점 적용은 각 과목 40%이상 득점 시 적용
	2) 직렬별 가산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



가. 취업지원 대상자(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가 없습니다.
(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)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사전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.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

나. 의사상자 등 대상자(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가 없습니다.(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)
- ※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☎044-202-3258)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다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1) 공통 적용 가산점

- 아래 표에 제시한 통신·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

구분	계급	자격증	가산비율
통신·정보 처리 분야	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	1%
	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	0.5%
사무관리 분야	9급	컴퓨터활용능력 1급	1%
		워드프로세서 【2012. 1. 1.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(2,3급 제외)】,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2) 직렬별 가산점

-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직렬	직류	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	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	가산비율
교육 행정	교육 행정	-	변호사	5%
시설	건축	기술사 :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 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	건축사	5%
		기능장 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 기사 :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 산업기사 :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		
일반 토목	일반 토목	기능사 : 전산응용건축제도, 타일, 미장, 조적, 온수온돌, 유리 시공, 비계, 건축목공, 거푸집, 금속재창호, 건축도장, 철근, 방수, 실내건축, 플라스틱창호	-	3%
		기술사 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	-	5%
		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		
		산업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		
기능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석공, 전산응용토목 제도, 측량	-	3%		


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**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, 가산비율,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**
 -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
 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(10% 또는 5%)을,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(5% 또는 3%)을 입력해야 합니다.
 - 자격증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(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)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**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**
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.
- 자격증 가산점수는 ‘공통 적용 가산점 자격증’ 1개, ‘직렬별 가산점 자격증’ 1개만 각각 인정하며(최대 2개 인정), 하나의 자격증이 ‘공통 적용 가산점’ 과 ‘직렬별 적용 가산점’ 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.
- 선택과목의 경우 ‘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’ 이란 응시자의 ‘조정점수’ 와 ‘조정 전 점수’ 중 어느 하나가 40%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8

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

가. 적용직렬 :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

나. 채용목표 : 30%

-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,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.



다. 실시방법

-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, 매 과목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-3점(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-3점을 곱한 점수)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.

※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.

9 장애인·저소득층 초과 합격제

가. 적용직렬 : 교육행정(장애인), 교육행정(저소득층)

나. 적용방법

-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(일반모집)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고,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%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.(단,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)

10 합격자 결정

가. 공개경쟁 임용시험 :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,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0%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(단,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)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나. 경력경쟁 임용시험 :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, 총 점의 6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,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20%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(단,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)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- 졸업 예정(2019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)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
-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.

※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1 응시자 유의사항

- 시험당일 응시표, 신분증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1개]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(09:20)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합니다.
-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MP, MP3, 무선호출기, 태블릿 PC 등) 및 전자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, 스마트안경, 스마트시계 등)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.
 - 통신장비,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(답안카드에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 됨)
 - OM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,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 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-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, 문자 송·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-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전출이 제한됩니다.
 -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: 임용된 날부터 3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
 -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: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

12 기타 사항

-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**【붙임2】 ‘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’**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**관련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 -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: 2019. 4. 15.(월) 09:00 ~ 2019. 4. 19.(금) 18:00까지
*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en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(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→알림마당→시험공고)
-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고시담당(☎062-380-412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2019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)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.
2.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.

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en.go.kr>) ‘알림마당’ → ‘시험공고’ 란에 공고합니다.